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2023년도「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3.

여수시도시관리공단

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및 적용)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위탁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본 시방서는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톤당 위탁처리 용역 단가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개 요)

가. 용 역 명 : 2023년도「여수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용역

나. 처리대상 : 바닥재, 안정화처리물 및 하수처리오니

다. 용역내역 : 수집 ·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마. 예정물량 : **6,350톤/년**

※ 예정 물량은 우리 공단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용역 기간은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다.

바. 폐기물 배출 계획

구 분	내 용		
	바닥재(일 최대)	안정화처리물(일 최대)	하수처리오니(일 최대)
예정수량	4,300 톤/년	1,200 톤/년	850 톤/년
	일평균 : 19.86톤 (40.8)	일평균 : 6.0톤 (12.7)	일평균 : 5.0톤 (11.5)
운반횟수	3~4회 (6회)	1~2회 (3회)	1~2회 (3회)
배출시설	1개소(습식 재추출기)	1개소	2개소
용 량	적재함 10㎥ (5톤 암롤 차량용)		
규 격	L3,600×W1,900×H1,500		

※ 배출시설의 상부 높이 제한으로 적재함(암롤)을 차량에 상차한 상태에서 진입불가

※ 적재함(암롤) 분리 가능한 차량만 상차 가능

※ 적재함(암롤) 용량(10㎥ / 5톤 암롤 차량용) 제한(배출시설 규격)

※ 운반횟수 (일평균) 4~6회, (일최대) 10회 이상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시설명: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다. 계약상대자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위탁처리)

가. 작업범위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기준 및 방법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그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처리절차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적재함(암롤)은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② "계약상대자"는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량

① "발주기관"의 계량시설에서 공차 및 실중량 계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인계서"라 함은「폐기물관리법」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제5조 (주요업무)

"계약상대자" 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배출 일정의 운휴 및 지연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기관" 이 인지하지 못한 제반법규 사항

제6조 (일반사항)

본 과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법에서 규정한 처리에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가. 폐기물 처리는「폐기물 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진다.

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 는 과업 착수 시 "발주기관" 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발주기관" 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발주기관" 에 통보하고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 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 은 과업 수행과정의 계근,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부적합

한 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불이행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8조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통상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여수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예상물량으로 계약물량이 증·감 될 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다.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라.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대금의 청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수료를 “발주기관”의 계량대에서 계근한 계근 전표를 종합하여 톤당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나. 비용은 월 단위로 청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별도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